

학습자료 (영유아 교육기관 교사를 위한 일반직무교육)

1차시.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

*아동학대 - 물리적 방임

-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
-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
-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

*아동학대 신고 시, 주의해야 할 사항

- 아동학대 신고를 할 때는 큰일이 난 것처럼 하여 아동이 불안하지 않도록 일상적으로 행동하면서 신고 전과 동일한 태도로 아동을 대하고 지지하여야 한다.
- 아동의 말을 경청하고 비언어적인 대화에 반응해주면서 학대를 받는 것이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시켜 주어야 한다.
- 지나친 반응 및 신체 접촉은 오히려 아동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는 것이 좋음
- 진술이 오염되지 않도록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은 하지 않아야 한다.

*정서학대

-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,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나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, 차별, 편애하는 행위 등은 정서학대 유형에 속한다.

2차시.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

*아동성폭력

- 접촉하는 행위와 접촉하지 않는 행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.
- 아동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에 따라 영향의 심각성이 달라진다.
- 아동과의 관계 또한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.
- 아동을 대상으로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성적 욕구 충족 및 성적착취 등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.

*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장에서 어른이 해야 할 것을 알고 교육 시 활용해야 할 내용

- 저 연령아동들에게는 남, 녀의 신체구조 차이를 자연스럽게 깨우치도록 해주어야 한다.
- 이름과 집 전화번호를 알고 비상시 연락번호를 외우게 해야 한다.
-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져서 혼란을 느낀다면 즉시 교사 및 부모에게 이야기 할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야한다.

*아동이 이야기를 잘하게 하기 위해 교사가 지도해야 할 행동

-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자기표현을 많이 하도록

해야한다.

- 어떤 이야기라도 괜찮으며,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이 도와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게끔 해야 한다.
- 아이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지지와 공감을 하고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.
- 선생님의 감정 또한 표현하고, 화나지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.
- 진지하고 엄중한 어투보다는 따뜻함을 충분히 준 후에 분명한 체계를 주어야 한다.

*아동 청소년 성폭력 신고의무자

- 현행법상 학교와 교사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.
- 학교 및 교사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67조 제4항에 의거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다.

*성폭력

- 성(性)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·언어적·심리적 폭력으로 강간뿐 아니라 희롱이나 음란 전화, 성기 노출, 추행 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포함하는 것

3차시. 실종·유괴 예방교육 - 실종아동 이해 및 예방교육 실태

*실종아동의 유형

- 미아 : 공공장소 등에서 아동이 길을 잃은 경우
- 유괴 : 금전, 성적 만족, 양육 등의 목적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
- 가출 : 아동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

*아동 실종 및 유괴 유형에 따른 교육방법

- 호기심유발형 - 모르는 사람이 건네주는 물건은 절대 받지 말고, 먼저 보호자의 허락을 받도록 지도
- 동정심 유발형 - 직접 도와주지 않고, 도움을 요청한 어른에게 다른 어른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절을 베푸는 것임을 인지하도록 지도
- 물리적 강제동원형 - 누군가 강제로 데려가려 한다면,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'안돼요', '싫어요'라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지도
- 지인 사칭형 - 아무리 급한 경우라도 먼저 보호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, 보호자와 통화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사람(친인척)의 연락처를 암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

*미아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교육 시 유의해야 할 사항

- 미아 상황에 대한 지나친 공포심 조성은 피해야 함
- 미아 상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, 죄책감은 상황 대체에 역효과적임을 인식해야 함
- 어렵פות한 추측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에 근거하여 접근해야 함

*약취·유인

- 약자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

4차시. 실종·유괴 예방교육 - 실종 신고 및 대처방법

*유인전략 - 지인사칭형

- “엄마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어. 빨리 가 보자.”와 같이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짓 말로 유인하는 것
- “엄마 친구란다. 엄마가 나에게 너를 데려오라고 하셨어.” 등 부모님의 친구, 친척이라고 사칭하여 유인하는 유형
- 부모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든지 따라가지 않으며 가족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한 뒤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.

*실종아동 발견 시 지침

- 그 자리에서 바로 국번없이 112 혹은 182로 전화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한다.
- 아동에게 이름, 사는 곳, 전화번호 등을 물어보고 이름을 불러주며 달래준다.
- 안내방송이 가능한 시설을 찾아 안내방송 요청을 한다.

*유괴 예방을 위한 아동들의 안전수칙

- 낯선 사람이 이름을 부르며 잘 아는 척 행동할 경우 대꾸하지 않고 신속히 피하도록 해야한다.
- 낯선 사람이 돈, 과자, 음료수 등을 줄 경우 받지 않아야 함
- 낯선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경우, 알려만 주고 따라가지 않아야 함

*#0182

- 실종신고를 하는 방법 중 문자상담은 내용 및 사진을 입력 후 #0182로 전송한다.

5차시. 재난대비안전교육 - 지진

*진앙

- 지진 발생 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
- 진원에서 지표면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지점을 ‘진앙’이라고 한다.
- 진앙은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표이기 때문에, 지진이 발생 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기도 하다.

*어린이집 지진 발생 시 대응

-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가스, 전기를 신속히 차단한다.
-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부상자를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응급처치 후, 의료기관 등에 연락한다.
- 지진 발생 시, 영유아들과 함께 책상 아래 등 가깝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보호한다.

***장소별 지진대피방법**

- 백화점, 마트 : 장바구니로 머리를 보호,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피하고 흔들림이 멈출 경우, 밖으로 대피

***지진**

- 지각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까지 도달하여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

6차시. 재난대비안전교육 - 화재, 태풍

***재난대비안전교육**

- 6개월에 1회 이상 시행
- 연간 6시간 이상 시행
- 미이행 시,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
- 학교급별, 계절별, 안전 영역별 특성 고려

***화재 시 대피방법**

- 중요한 물건을 챙기려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야한다.
- 연기가 많은 곳의 경우, 자세를 낮춰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짧게 하며 대피해야 한다.
- 건물에 고립되었을 경우, 가능한 대응을 하고 구조를 기다린다.

***태풍 예보 시 행해져야 할 대처 요령**

-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, 간판, 창문, 출입문 또는 현 가구, 놀이기구,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둔다.
- 하천 근처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.
- 생필품은 미리 준비한다.

***태풍**

-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 최대 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

7차시. 재난대비안전교육 - 강풍, 대설·한파, 폭염, 황사·미세먼지

***기상재해 - 폭염**

-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

*** 폭염주의보 발표기준**

- 낮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

***황사 미세먼지 대비 요령중 어린이집 고농도 단계별 대응요령**

- 고농도 예보 단계 : 보호자 비상연락망,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
- 고농도 발생단계 : 실외활동자제, 바깥공기 유입 차단
- 경보단계 :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(진료 등)

***강풍**

- 평균 풍속이 초속 14m 이상인 바람이 1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

8차시. 재난대비안전교육 - 소방시설 안전관리

***소화기 압력계의 지시침**

- 소화기 압력계는 소화기의 용기내부가 압축가스로 채워진 상태를 나타내는 것
- 소화기에 부착된 압력계의 지시침을 확인해 상태를 점검한다.
- 정상상태의 압력은 지시침이 녹색 부분을 가리킨다.

***비상경보설비**

- 화재 발생 시 발신기의 스위치를 눌러 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피난 또는 화재의 초기진압을 용이하게 하는 설비

***비상출구(비상대피로)의 요건**

-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.
- 강화 통유리인 경우 비상구 규격에 맞아야 한다.
- 개방에 방해되는 커튼, 교구장, 짐 등을 놓아서 비상출구를 막지 않도록 해야한다.

***스프링클러**

-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스프링클러헤드에서 자동으로 열을 감지한 후 소화하여 화재를 진화하는 설비

9차시. 응급처치교육 - 심폐소생술

***가슴압박**

- 심정지 상태에서 적절한 가슴압박은 주요 장기로 혈류를 유지하고 자발순환회복의 가능성을 높인다.
- 영아나 소아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 상태라면, 즉시 30번의 가슴압박을 실시한다.
- 가슴압박은 평평하고 딱딱한 바닥에 눕혀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.
- 적절한 가슴압박은 100~120회의 속도로 압박하고, 적어도 흉곽 전후 직경의 1/3 깊이 또는 영아에서 4cm, 소아에서 4~5cm의 깊이를 압박해야 한다.

***기본소생술**

- 규칙적으로 숨을 쉬는 경우 심폐소생술은 불필요하다.
-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도가 더 많이 열리고 호흡이 최적화된 자세를 스스로 취하게

된다.

-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않거나 헐떡이는 숨만 있는 경우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한다.

***기도가 막힌 경우의 응급처치 방법**

- 가슴 압박 후 호흡을 하기 전에 입안에 이물이 보이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꺼낸다.
- 1세 이상 소아, 기도폐쇄가 심할 경우, 가로막 아래 복부밀어내기(하임리히법)를 이물이 나올 때까지 시행해야한다.
- 이물질 꺼내기 시도 시, 환자의 반응이 없거나 반응이 없어진 경우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해야한다.

***익사**

- 5세 미만, 불의의 사망 원인 중 2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

10차시. 응급처치교육 - 할컵, 당김, 놀림 등

***응급처치의 기본원칙**

- 언제나 신속, 침착, 질서 있게 대처해야 한다.
- 여러 환자가 있는 경우 긴급한 환자부터 처치해야 한다.
- 이송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.
-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 자신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.

***화상을 입었을 때, 응급처치방법**

- 화상 부위가 손이나 발일 경우, 천이나 거즈를 끼워서 서로 떨어뜨려 놓은 다음 깨끗한 붕대로 손과 발을 느슨하게 하고 병원에 방문해야한다.
- 물 혹은 불에 데인 경우, 옷을 벗기거나 환부 부위의 옷을 자르는 행동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하도록 해야한다.
- 화상부위에 물집이 생긴 경우, 터뜨리지 말고 물집이라도 절대 벗겨 내지 않아야 한다.

***벌에 쏘였을 때의 응급처치 방법**

- 신용카드 모서리로 살살 긁어 침을 제거해야한다.
- 흐르는 물로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연고를 발라줘야 한다.
-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경우, 즉시 병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.

***자상**

- 끝이 예리한 물체(못, 창 등)에 의해 피부가 찢려서 입는 상처

11차시. 시설안전교육

***시설안전관리의 목적**

- 잠재 위험요인의 조기 발견

- 위험요인의 신속한 제거
- 사고·재해를 미연에 방지

***안전관리제도**

-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을 받고,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한다.
- 안전점검 결과 위험을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신청
- 안전관리자 신고 및 안전교육 이수, 보험가입(보험한도액은 사망 시 8,000만원 이상), 중대 사고 발생보고 등

***안전관리자**

-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감독하며, 사고 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식시킬 뿐만 아니라,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태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

12차시.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

***약물의 오·남용**

- 스스로 자신의 질병과 치료법을 정하여 약을 사용한다.
- 의사 등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약을 사용한다.
- 약에 대한 광고만 믿고 약을 사용한다.

***약물 오·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**

- 의존성
- 내성
- 금단증

***약물**

- 사람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 내에서 생리적, 화학적 특성에 의해 유기체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키는 물질을 통칭하는 것.

13차시. 영유아감염병 예방교육

***풍토병**

- 병원체가 지역사회 혹은 집단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일정 수준의 감염을 유지하는 감염병

***감염병이 발생하는 요인**

- 병원체
- 환경
- 숙주

***감염과 관련한 주요 용어**

- 병원체(Pathogen)란 감염병의 1차 원인으로 세균, 바이러스, 리케차, 진균류 등의 미생물과 원충생물, 기생충 등의 각종 기생생물이 모두 포함된다.
- 풍토병(Endemic Disease)이란 병원체가 지역사회 혹은 집단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일정 수준의 감염을 유지하는 감염병이다.
- 유행병(Epidemic Disease)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의 질병이다.

***전염**

- 병원체가 하나의 숙주로부터 다른 숙주의 조직에 정착하여 계속 증식하는 것

14차시. 교통안전교육 및 통학차량 동승자 교육

***교통안전교육의 방향**

- 지속적이고 반복적
- 실천할 수 있는 지식과 태도 형성에 목표 설정
- 학습자들의 거주공간 특성을 고려

***교통안전표지판 중 지시표시**

- 보행자 전용 도로
- 어린이 보호
- 자전거 전용 도로

15차시.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

***현장체험학습 전 준비사항**

- 영유아 및 보육교사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
- 사전답사 실시
- 문서로 공지(가정통신문, 홈페이지, 대화수첩, 보육계획안 등)

***현장학습**

- 학습자료가 있는 현장의 학습장소를 옮김으로써 학습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학습 방법으로 자연이나 현실과 직접적인 접촉활동을 하는 것

16차시. 건강영양교육

***유아기의 특징**

- 음식 준비를 같이 함으로써 식습관지도 진행
- 유아기 때 보육시설에서는 식단을 가정으로 보내어 급식의 내용과 양을 고려할 수 있도록

하고, 음식을 준비하는데 유아를 참여시켜 관심을 유도하여, 식습관지도를 철저히 진행 해야 한다. 식기의 사용도 수월해지고, 음식의 외관을 신경 쓰므로 다양한 색과 형태, 질감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.

***간식**

- 비타민, 무기질 등을 균형 있게 제공한다.
- 식품 첨가물이 함유된 인스턴트 식품, 탄산음료, 냉동식품과 과자류는 간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.
- 식사 시 후식으로 제공되는 과일은 간식에 포함하지 않는다.

***영양사 1인 배치**

- 100인 이상의 영우아 수

***어린이집의 급식 관리**

- 취사부(조리원)은 영유아 80인 초과 시마다 1인씩 증원해야 한다(방과후는 제외).
-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동일 시·군·구의 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.
-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집단급식소로 신고한다(교사포함).

17차시. CCTV 안전교육

***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의 처벌**

-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***CCTV의 설치조건**

- CCTV는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, 그 영상정보를 녹화·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.
- CCTV는 각 보육실, 공동놀이실, 놀이터, 식당, 강당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-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.

***CCTV의 설치구역**

-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(주/부출입문)
- 어린이집 내부의 계단과 계단 사이의 연결 공간
-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지역 및 중요실

***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·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의 처벌**

- 과태료 최고 300만원 이하

*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저장장치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
- 60일 이상의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.

*CCTV 관리자는 열람대장을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.

18차시. 영유아집 통학차량 동승자교육

*차량운행 시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
- 36개월 미만

*승하차시, 동승자의 의무

- 영유아가 하차한 후 지체 없이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들의 승하차 상황 확인 및 담임교사에게 통보
-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
-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 확인

19차시. 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및 인성 덕목

*인성교육의 필요성

- 심리적 측면 - 보다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의도적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은 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다. 인성은 경험에 따라 변화수준과 삶의 방향, 도덕적 행위의 질적 수준이 결정된다.
- 개인적 측면 -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예절과 질서를 지키고, 서로 도우며 더불어 행복을 찾도록 하는 교육은 개인의 행복을 가꿔주는 기본이 된다.
- 사회적 측면 - 전통적인 가치의 상실, 이기주의, 황금만능주의, 공동체 의식의 상실, 도덕성의 상실 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.

*교육부가 제시한 창의·인성교육의 방향

- 개인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아 키워주는 교육이 핵심이자 미래교육의 본질이 되어야 함
- 통합교육과정, 간학문적 교육과정, 문제 중심, 활동 중심, 탐구 중심의 자기 주도적 교육방법을 사용해야 함
- 창의성 발휘와 표현을 돕는 문화와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함

20차시. 인성교육의 실제

*인성교육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
- 만 4~5세

21차시. 청탁금지법

22차시. 퇴직연금 교육